제1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(서면회의)

1. 회의일시 : 2019. 4. 23.(화)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

3. 참석위원 : 이효성 위원장

김석진 부위원장 표철수 상임위원 허 욱 상임위원

고삼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음

5. 회의내용

Ⅱ 서면회의 사유

o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제14조(서면결의)에 의거, 의결사항 '가', '나'는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·반복적 안건에 해당됨

2 의결사항

가. 방송광고 법규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(2019-18(서)-084~086)

o 「방송법」제73조제2항, 「방송법 시행령」제59조 및 「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고시」 제10조를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㈜씨제이이엔엠 등 3개 위반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(안)을 다음과 같이 의결함

< 과태료 부과(안) >

피심의인	위반 법규	과태료 금액
㈜씨제이이엔엠	「방송법」제73조제4항, 「방송법 시행령」제59조제3항제1호, 「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」제10조 제2호	375만원
㈜기독교텔레비전	「방송법」제73조제2항, 「방송법 시행령」제59조제2항제2호가목	1,500만원
㈜대교	「방송법」제73조제4항, 「방송법 시행령」제59조제3항제1호, 「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」제10조 제2호	1,500만원

나. 협찬고지 법규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 (2019-18(서)-087~090)

o 「방송법」 제74조제1항·제2항, 「방송법 시행령」제60조제2항 및「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」 제11조에 따른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을 위반한 대구문화 방송㈜ 등 4개 위반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(안)을 다음과 같이 각각 의결함

< 과태료 부과(안) >

피심의인	위반 법규	과태료 금액
대구문화방송㈜	「방송법」제74조제1항, 「방송법 시행령」제60조제2항제2호	500만원
한국소비자티브이㈜	「방송법」제74조제2항, 「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」제11조제3항제1호	350만원
㈜에이온	「방송법」제74조제2항, 「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」제11조제3항제1호	350만원
㈜지엠티비	「방송법」제74조제1항, 「방송법 시행령」제60조제2항제2호	500만원